2019. 9. 24.

유럽사법재판소 대합의부

C-136/17 판결

판결내용 요약

사실관계

원고들은 검색엔진 구글에서 각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제3자가 게시한 웹페이지로 연결되기에 이러한 링크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고 A는 누구인지 모르는 제3자가 자신이 정치인(시장)과 함께 있는 사진을 합성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는데 향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고 B는 자신이 사이언톨로지 교회 홍보책임자로 언급돼 있는 기사에 대해 이미 활동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원고 C는 자신이 여러 사업가 및 정치인과 함께 기소된 사건 기사에 대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D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링크 삭제를 요청하였다. 프랑스 국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유럽연합의 정보보호지침(95/46/EC) 및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상 관련 내용 - 정보보호지침 등은 기본적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보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정보전달을 통한 공공의 이익 등의 경우 컨트롤러(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개인· 단체 등) 및 제3자에 의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보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의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운영자는 컨트롤러로 간주되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게시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전술한 뒤, 만약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구글은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익성 등 정보보호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대중의 정보 접근권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 2019년 9월 24일 판결(대합의부)

(ARRÊT DE LA COUR (grande chambre) 24 septembre 2019)

« 선결 판결에 대한 참조 – 개인 정보 -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이러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 보호 - 개인정보지침 95/46과 EU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 인터넷 검색 엔진 -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 처리 - 개인정보지침의 8조 및 EU 개인정보보호규정의 9조 및 10조에 언급된 정보의 특정 범주 - 검색 엔진 운영자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가능성 - 해당 규정에서의 검색 엔진 운영자의 의무 범위 - 저널리즘 또는 예술적이나 문학적 표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정보 게시 – 기록삭제 청구의 처리 사건 –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éenne)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

C-136/17 사건은,

2017년 2월 24일 결정에 따라 국사원(프랑스)이 제기한 TFEU 제267조에 따른 선결 판결 요청이 2017년 3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GC,

AF,

BH,

ED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를 피고로,

이하에 대해:

총리,

Google Inc.의 권한을 인수받은 **Google LLC**

재판부(대심),

재판은 재판부의 장(président)인 K. Lenaerts의 주재로 각 부(chambre)의 장인 A. Arabadjiev, A. Prechal, T. von Danwitz, C. Toader, F. Biltgen 및 판사인 M. Ilešič (rapporteur), L. Bay Larsen, M. Safjan, D. Šváby, C. G. Fernlund, C. Vajda, S. Rodin로 구성되고,

대표 변호사인 M. Szpunar,

법원서기(행정직) V. Giacobbo-Peyronnel

2018년 9월 11일의 심리가 속행되어,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이하에 언급된 이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

- AF,
- BH, 변호인 L. Boré,
-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I. Falque-Pierrotin, J. Lessi 및 G. Le Grand,
- Google LLC의 변호사인 P. Spinosi, Y. Pelosi 및 W. Maxwell,
- 프랑스 정부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D. Colas, R. Coesme, E. de Moustier 및 S. Ghiandoni,

- 아일랜드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M. Browne, G. Hodge, J. Quaney, A. Joyce 및 보좌인, M. Gray, BL,

- 그리스 정부를 위해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E.-M. Mamouna, G. Papadaki, E. Zisi, S. Papaioannou,
- 이탈리아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G. Palmieri, 보좌인 F. De Luca, 유럽연합검사 P. Gentili,
- 오스트리아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G. Eberhard, G. Kunnert,
- 폴란드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B. Majczyna, M. Pawlicka, J. Sawicka,
- 영국 정부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S. Brandon, 보좌인 및 법정변호사 C. Knight,
-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A. Buchet, H. Kranenborg 및 D. Nardi,

2019년 1월 10일 심리에서의 유럽연합검사의 의견에 대해서,

이하의 사항을 전달한다

판결

1. 선결 판결에 대한 청구는, 개인 데이터 처리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서, 개인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개인정보지침 95/46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JO 1995, L 281, p. 31).
2. 해당 청구는 성명을 통해 검색되고 제3자가 게시한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결과인 목록상의 다양한 링크의 기록삭제에 대해서 현재 Google LLC인 Google Inc.가 거부하면서,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4가지 결정에 대해 GC, AF, BH 및 ED가 항소한 사건이다.

사법적 범위

연합의 권리

개인정보지침 95/46

3. 개인정보지침 95/46 제1조 제1항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호, 특히 개인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와 관련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4. 개인정보지침 95/46의 33 및 3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33) 기본적 자유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처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34)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의 카테고리에 대한 처리 금지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 ;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보장을 규정하는 것은 각국의 몫이다 ».

5. 개인정보지침 95/46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해당 지침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개인 정보" :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 ; [...]

b) "개인 정보 처리"(처리) : 저장, 조직, 보존, 각색 또는 수정, 추출, 상담, 이용, 전송, 송출 또는 기타 가능한 다른 모든 방식을 통한 통신, 접근 또는 접속뿐만 아니라 차단, 삭제 또는 해체를 통해 수집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아닌 개인 데이터에 적용되고 실현된 모든 작업 또는 작업의 총체 ;

[...]

d) "컨트롤러":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서비스 또는 기타 기관 ; [...]

[...]

h) “정보 주체의 동의”: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 정보가 처리 대상임을 수락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정보 주체로부터 통지된 모든 의사 표현. »

6. « 정보의 특징에 관한 원칙 »이라는 제목의 해당 지침의 제2장 제1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 1.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 정보는 :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b)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이러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 [...]

c) 해당 정보의 수집이나 이후의 해당 정보의 처리를 위한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

d)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로 유지되어야 한다 ; 수집되거나 이후에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수집 목적 또는 이후에 처리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앞서 언급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개인 정보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앞의 1단락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는 컨트롤러의 책임이다. »

7. « 정보 처리의 합법화에 관한 원칙 »이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2장 제2절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회원국은 다음 경우에만 개인 정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

[...]

f) 제1조 제1단에 따른 보호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정보의 전달과 관련해서 컨트롤러 또는 제3자로부터 추구되는 정당한 이익의 실현이 요구된다. »

8. « 정보 처리의 특정 범주 »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2장 제3절 제8조 및 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의 특정 범주에 관한 처리 »라는 제목의 해당 제8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 1. 회원국은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소속을 나타내는 개인 정보의 처리를 비롯해 건강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까지 금지한다.

2. 앞의 제1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회원국의 법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해 해당 동조 제1단의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가 이와 같은 정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

e) 이러한 처리는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공개한 정보와 관련된 처리 또는 사법상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행사 또는 방어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

[...]

4 적절한 보장을 전제로, 회원국은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동조 제2단에 대한 예외 조항을 국내법 또는 감독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5 범죄, 형사상 유죄 판결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정보 처리는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지만, 만약 회원국이 국내규정을 통해서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유죄 판결에 대한 포괄적 수집은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만 수행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행정 제재나 민사 판결과 관련된 정보 또한 공공 기관의 통제를 통한 처리를 규정할 수 있다.

[...] »

9. « 개인 정보 처리 및 표현의 자유 »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회원국은 저널리즘 또는 예술적, 문학적 표현을 위한 목적의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 규정을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만, 동지침 제4장 및 제6장의 예외나 면제를 규정한다. »

10. « 접근권 »이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회원국은 모든 정보 주체가 컨트롤러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b) 경우에 따라,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부정확성으로 인해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정보 처리의 수정, 삭제 또는 차단 ;

[...] »

11. « 정보 주체의 항변권 »이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회원국은 정보 주체에게 다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a) 적어도 제7조 (e) 및 (f)에 언급된 경우에, 국내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우선적이고 합법적인 이유로, 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언제든지 반대(항변)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정당한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러에 의한 정보 처리는 그 이상 해당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

[...] »

12. « 통제권 »이라는 제목의 개인정보지침 95/46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1. 각 회원국은 동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이 채택한 규정이 자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하나 이상의 공공 기관을 통해 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

[...]

3. 감독 기관은 특히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처리 중인 정보에 접근하고 감독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집 권한과 같은 조사 권한,
- 예를 들어 [...] 정보의 차단, 삭제 또는 해체에 대한 명령 또는 처리의 일시적, 절대적 금지와 같은 효과적인 개입 권한 [...]

[...]

감독 기관의 결정은 사법적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개인 또는 이들의 대리기관은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 관련된 청구를 감독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후속 사항을 고지받는다.

[...]

6. 해당 처리에 적용되는 국내법과는 관계없이, 각 감독 기관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동조 제3단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이들 감독 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기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들 감독 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히, 모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 »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13. 개인정보지침 95/46(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JO 2016, L 119, p. 1, 및 JO 2018 수정, L 127, p. 2)을 폐지하면서, 2016년 4월 27일의 개인정보처리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개인 보호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6/679을 동규정 제9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14.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전문 1, 4, 51, 52 및 6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1)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 보호는 기본권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 제1단(이하 "헌장"이라고 함) 및 [TFEU] 제16조 제1단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개인정보처리는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 사회 안에서 해당 권리의 기능은 고려되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은 모든 기본권을 존중하고 조약에 명시된 헌장이 인정하는 자유와 원칙, 특히 사생활 및 가족 생활, [...] 개인정보보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준수한다, [...]

[...]

(51) 자유와 기본권의 관점에서 성격상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는 처리 중에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52) 특별 범례의 개인 정보의 처리 금지에 대한 예외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에서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 및 다른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 [...]

[...]

(65) 이러한 정보의 보유가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또는 컨트롤러가 속한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규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 "잊혀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그럼에도,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인 정보의 계속적 보유는 적법해야 한다 [...] »

15.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4조 제11은 « 동의 »의 개념을 « 처리 대상인 개인정보는 선언 또는 명백히 긍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보주체에 의해 수락된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시적이고, 일관된 의사의 표시 »로 정의한다.

16.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원칙 »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5

조 제1항 c) 내지 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

c)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됨(정보 최소성) ;

d)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로 유지되어야 한다.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개인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정확성) ;

e) 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련된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관 ; [...] (보관 제한) ».

17. « 정보의 특정 범주에 관한 처리 »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1.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또는 노동조합소속을 나타내는 개인정보처리, 유전적 정보, 자연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방식의 생체인식 데이터, 건강정보 또는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처리는 금지된다.

2. 앞의 제1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회원국의 법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해 해당 동조 제1단의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가 이와 같은 정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e) 이러한 정보 처리는 정보 주체가 명백하게 공개한 개인 정보로 한정된다 ;

[...]

g)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여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에 근거하여, 정보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하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할 것을 요구

받는다 ;

[...] »

18. « 형사상 유죄 판결 및 범죄에 관한 개인 정보의 처리 »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형사상 유죄 판결 및 관련 범죄나 동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는 공공 기관의 통제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회원국 또는 연합의 법규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모든 형사상 유죄 판결과 관련한 기록은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

19. « 삭제할 권리(“잊혀질 권리”) »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1.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컨트롤러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개인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진다:

a) 다른 방식으로 수집 또는 처리된 목적을 위해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 ;

b) 동규정 제6조 제1항 a) 및 제9조 제2항 a)에 따라서, 정보 처리에 동의한 정보 주체가 해당 동의를 철회하고, 정보 처리에 대한 다른 사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 ;

c) 정보 주체가 동규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처리에 반대하면서, 정보 처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주체가 동규정 제21조 제2항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

d) 개인 데이터가 불법 정보 처리의 대상이 된 경우 ;

e) 개인 정보는 유럽연합 또는 컨트롤러가 소속된 회원국의 법규가 규정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 ;

f) 동규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범위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

2. 개인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해당 정보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삭제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사용 가능한 기술과 구현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여, 해당 정보의 컨트롤러에게 정보의 주체가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

또는 해당 사본이나 복제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

[...] »

20. « 항변권 »이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21조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정보 주체는 특정 상황을 원인으로 동규정 제6조 제1항 (e) 또는 (f)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의 이익 및 권리와 자유를 우선하는 정보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사법상 이의 제기, 청구 또는 방어의 경우를 위한 합법적이고 긴급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개인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

21. « 정보 처리와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1. 회원국은 해당 규정의 개인정보보호권, 저널리즘 및 학술적, 예술적 또는 문학적 표현을 위한 처리를 포함한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국내 법률을 통해 조화시켜야 한다.

2. 저널리즘 또는 학문적, 예술적 또는 문학적 표현을 위한 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와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국은 제2장(원칙), 제3장(정보 주체의 권리), 제4장(컨트롤러 및 관리자), 제5장(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 정보의 이전), 제6장(독립적 감독 기관), 제7장(협력 및 일관성) 및 제9장(특수 처리 상황)에 대한 면제 및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

[...] »

프랑스법

22.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프랑스 국내법으로의 시행은,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n° 78-17)을 통해 중요한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을 통해 보장된다.

23. 1978년 1월 6일 법률(n° 78-17) 제11조는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임무 중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가 수행되고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개인정보처리의 시행과 관련한 항의, 청원 및 이의제기를 접수하며, 이들에게 후속 조치와 관련한 사실을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주요사안 및 선결적 문제

24. GC, AF, BH 및 ED는 각자 자신의 성명으로 검색되는 제3자가 게시한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다양한 링크의 결과 목록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였다.

25. 보다 구체적으로, GC는 2011년 2월 18일 자신이 참모장으로 있던 마을의 시장과 함께 있는 풍자적 합성사진을 YouTube에 가명으로 게시한 링크 삭제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진은 시장과 자신이 명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합성사진은 당시 GC가 후보였던 지역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 중에 온라인에 게시되었다. 이러한 삭제 요청이 거부되었던 날에, 이해당사자인 GC는 선출되지 않았고 지역 선거대리인 후보자도 아니었으며, 더는 마을의 시장에 대한 선거에서의 참모장의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26. AF는 2006년 12월 사이언톨로지 교회 신자의 자살에 관한 2008년 9월 9일 자 일간지인 Liberation 기사와 이러한 사실이 Centre Contre les Manipulations Mentales (CCMM) 사이트에 복제된 기사를 참조하는 링크의 목록 삭제를 요청하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AF는 이미 활동을 중단한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홍보 책임자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사의 작성자는 AF에게 연락하여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이에 대한 인터뷰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27. BH는 여러 사업가 및 정치인과 함께 그는 기소되었던 1995년 6월에 열린 공화당

(PR) 자금 조달에 관한 사법 조사와 관련한 언론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의 삭제를 요청했다. BH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2010년 2월 26일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논쟁 중인 대부분의 링크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기사로 이어지며, 결론적으로 해당 링크가 이러한 절차를 나타내지 않는다.

28. ED는 Nice-Matin과 Le Figaro에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행위로 7년의 징역과 10년의 사회사법적 조치를 선고받은 중죄법원의 심리에 대해 보고한 두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의 목록 삭제를 요청했다. 더구나 법원 기사 중 하나는 재판 중에 밝혀진 ED와 관련된 몇몇 사적인 세부 사항을 언급하였다.

29. Google이 검색된 목록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후, 청구권자들은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에 대해, 문제의 링크 목록을 구글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장은 2015년 4월 24일과 2015년 8월 28일, 2016년 3월 21일 및 2016년 5월 9일에 청구권자들에게 해당 청구는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다.

30. 청구권자들은 국사원(Conseil d'État)에 자신들의 구글에 대한 목록 삭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한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결정에 항소하였다. 법원은 이들 소송을 병합하였다.

31. 국사원(Conseil d'État)은 해당 청구가 개인정보지침 95/46의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의 선결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 1) 검색 엔진 운영자의 책임, 기술 및 특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이 규정하는 원래의 컨트롤러 외의 컨트롤러에게 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예외 사항은 컨트롤러이자 검색 엔진의 운영자에게도 적용되는가?

2)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경우 :

[a)]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에 대한 삭제 청구를 체계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이러한 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b)]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a) 및 e)가 규정하는 예외를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해당 운영자의 특정 책임, 기술 및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의 예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특히, 특정 사항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가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1항에 나열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해당 지침 [제8조 제2항, a) 및 e)]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운영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운영자는 삭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c)]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9조가 규정하는 청구된 링크의 삭제는 저널리즘 또는 예술적이나 문학적 표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로 연결되는 경우에, 이 지침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목록 삭제 요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는가?

3)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의 경우 :

[a)] 검색 엔진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 기술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지침 [95/46]의 어떠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b)] 목록 삭제가 청구된 링크로 연결된 웹 페이지의 게시가 불법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검색 엔진 운영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은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청구권자의 성명으로 검색된 결과 목록에서 해당 링크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지 ;
- 또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이 삭제 청구의 합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
- 또는 이러한 상황이 평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의 영

토적 적용 및 그 결과 시행된 국내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처리의 결과로서 웹 페이지 상 문제가 되는 정보 게시의 적법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4)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과는 관계없이 :

[a)]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링크로 연결되는 웹 페이지의 개인 정보 게시의 적법성과는 관계없이,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또는 더는 최신 정보가 아님을 청구권자가 확인한 경우, 검색 엔진 운영자는 해당 목록의 삭제 청구를 승인해야 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청구권자가 소송의 초기 단계와 관련된 정보가 더는 자신의 현실 및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검색 엔진 운영자는 해당 정보가 있는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하는가?

[b)]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개인의 기소 또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그로 인한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는 범죄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에 자연인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가? »

선결된 문제에 대해(Sur les questions préjudicielles)

32. 개인정보지침 [95/46]의 해석과 관련한 해당 문제는 선결 판결이 청구된 시점에 적용되었다. 해당 지침은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적용 시점인 2018년 5월 25일부터 폐지되었다.

33.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항소법원인 국사원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지침 [95/46]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 또한 검토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34.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항소법원인 국사원은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이 개인 정보의 특정한 범주에 대한 처리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검색 엔진 운영에 필요한 컨트롤러로서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을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였다.

35. 이와 관련하여, 한편,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시한 정보를 찾고, 자동으로 색인을 생성하고, 임시로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지정하는 검색 엔진 운영자의 활동은, 정보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개인정보지침 95/46 제2조 (b)가 의미하는 "개인정보처리"의 자격이 부여되며, 다른 한편, 만약 해당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검색 엔진의 운영자는 해당 지침의 제2항 d) 규정에 따라서 « 컨트롤러 »로 간주되어야 한다(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41).

36. 따라서, 검색 엔진 활동의 범위 내의 개인정보처리는 이러한 정보를 웹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게시자의 활동과는 구분되며, 이러한 활동은 동일한 정보가 게시된 웹 페이지를 찾지 못한 인터넷 사용자를 포함하여 정보 주체의 성명을 검색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게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의 구성 및 집계는, 만약 자연인의 성명을 검색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자들은 결과 목록에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당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의 구조화된 개요를 통해 해당 자연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세한 프로필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35-37).

37. 결과적으로, 검색 엔진의 활동이 웹사이트 게시자의 활동에 비해 상당히 그리고 추가적인 방식으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한, 해당 엔진의 운영자는 이러한 활동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로서, 자신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을 통한 보장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 같은 정보 주체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38).

38. 첫 번째 선결문제는, 만약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정보가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한 정보에 포함되고 검색 엔진 운영을 위해 해당 운영자가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검색 엔진 운영자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지침 95/46이 개인 정보의 특정 범주와 관련하여 설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39. 정보의 이러한 특수 범주에 관해,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은 회원국이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소속을 비롯해 건강 및 성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 제8조 제2항은 이러한 금지에 대한 특정 예외를 규정한다.

40.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은 범죄, 유죄 판결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정보 처리는 공공 기관이 통제하거나 국내법에 의해 적절하고 특수한 보장을 할 수 있다면, 적절하고 특수한 보장을 규정하는 국내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허용할 수 있는 예외로써 허용된다. 그러나 유죄 판결 정보에 대한 포괄적 수집은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서만 허용된다. 회원국은 행정적 제재 또는 민사 판결과 관련된 정보도 공공 기관의 통제 하에서 처리할 수 있다.

41.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9조 제1항에 의해 수정되었다.

42.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지침 95/46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예외 사항이 정하는 금지 및 제한 사항은 해당 지침과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의 특정 범주에 대한 모든 처리 유형 및 이러한 처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43. 다음으로, 해당 지침 또는 해당 규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검색 엔진 활동 범위에서의 처리를 위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해당 판결의 37과 같이, 해당 엔진의 운영자는 다른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가 개

인정보지침 95/46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요구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44.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방식으로써, 특정 범주의 정보와 관련된 처리를 규정하는 특정 요구 사항의 검색 엔진 활동은 해당 조항의 목적, 즉 강화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되며, 이러한 정보의 특정 민감도는 해당 지침의 33과 해당 규정의 51을 고려한 결과, 헌장 제7조와 제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임이 명백하다.

45. 만약 Google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검색 엔진 운영자가 구글의 활동의 일부로 수행한 처리의 특수성은, 해당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준수를 면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러한 특수성은 이들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운영자의 책임 및 구체적인 의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6.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가 강조하는 것처럼, 검색 엔진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한 웹 페이지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해당 웹 페이지, 특히 자연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인터넷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는 링크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글 스페인과 구글의 2014년 5월 13일 판결을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80).

47. 이러한 조건에서, 검색 엔진 운영자의 활동 범위에서 수행되는 컨트롤러로서, 검색 엔진 운영자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1항 및 제10조는 유럽연합검사의 의견서 56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정보 주체의 청구에 기반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서, 해당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48. 전술한 내용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

항 및 제5항의 규정이 특정 범주의 처리에 있어서 금지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해당 지침에 대한 예외로, 해당 활동 중 수행된 컨트롤러로서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의 범위에서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도 적용되며, 정보 주체의 청구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서 해당 운영자가 엔진의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49. 세 부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문제에 대해 항소법원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다 :

-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이 지침에 의해 제공된 예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가 표시되는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와 관련된 목록에 대한 삭제 청구를 검색 엔진 운영자가 승인해야 하는지 ;
-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a) 및 e)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동지침 제8조 제1항의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제의 링크로 연결되지만, 이러한 처리가 동지침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검색 엔진 운영자는 삭제 청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은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삭제가 요청된 링크가 개인 데이터가 해당 범위에 속하는 페이지 웹으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운영자가 삭제 청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 지침의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특수 범주는 저널리즘 또는 예술적이거나 문학적 표현의 유일한 목적으로 게시되고, 이러한 게시는 해당 지침의 제9조의 예외가 적용된다.

50.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지침 95/46의 범위 내에서 주요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삭제 청구는 특히 그 근거를 동지침 제12조 b)에서 근거를 찾는데,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정보 처리로 인해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로부터 정보 처리의 삭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회원국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51. 또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14조 a)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회원국은, 최소한

동지침 제7조 e) 및 f)에 언급된 경우,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특정 상황과 관련된 우선적이고 합법적인 이유로 처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인정한다.

52.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12조 b) 및 제14조 a)의 첫 번째 단락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권리 및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검색 엔진 운영자는 개인의 성명으로 검색되고 표시되는 결과 목록과 제3자가 게시한 웹 페이지 링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웹 페이지에서 선결적으로 또는 동시에 삭제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페이지의 게시 자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성명이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arrêt du 13 mai 2014, Google Spain et Google, C-131/12, EU:C:2014:317, point 88).

53.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평가하고자, 정보 주체는 자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정보가 자신의 성명을 검색해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의해 자신과는 더는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사 없이는 문제가 되는 정보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보 주체는 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권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보가 해당 결과 목록에 포함된 이유로, 일반 대중에게 더는 제공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검색 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성명을 검색할 때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대중의 이익에도 우선한다. 그러나 공적 생활에서 정보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간섭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대중의 최우선 이익에 의해 정당화된다 (arrêt du 13 mai 2014, Google Spain et Google, C-131/12, EU:C:2014:317, point 99).

54.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자는 이 규정의 제17조에서 « 삭제할 권리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 잊혀질 권리 »라고도 한다.

55.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제17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정보 주체는 컨트

롤러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컨트롤러는 이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사유에서, 해당 규정은 정보가 더는 처리 목적에 필요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철회하여,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14조를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에 반대하고 정보가 불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해당 정보는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해 삭제되어야 하지만, 아동에게 사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만 수집될 수 있다.

56.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7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문제의 처리가 필요한 범위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동규정 제17조 제3항 a)에서, 특히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가 포함된다.

57.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7조 제3항 a)는 특히, 헌장 제11조가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위한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과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서문 4가 강조하는 사회에서의 기능 및 비례의 원칙에 따른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이 고려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삭제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Volker und Markus Schecke와 Eifert의 2010년 9월 9일 판결 참조, C-92/09 et C-93/09, EU:C:2010:662, point 48, ainsi que avis 1/15 (Accord PNR UE-Canada), du 26 juillet 2017, EU:C:2017:592, point 136].

58. 이러한 맥락에서 헌장 제52조 제1항은 동헌장 제7조 및 제8조에서 명시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법에 의해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도,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존중하고, 우럽연합이 인정하는 일반적 이익의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Volker und Markus Schecke와 Eifert의 2010년 9월 9일 판결, C-92/09 et C-93/09, EU:C:2010:662, point 50).

59.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특히 제17조 제3항 a)는 한편으로는 헌장 제7조와 제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 사이의 균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장 제11조가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한다.

60. 이러한 고려 사항에 비추어, 검색 엔진 운영자는 목록의 삭제 청구를 승인해야 하고,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되어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를 표시하는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하는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

61.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에 언급된 특별 범주의 정보에 대한 검색 엔진 운영자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동지침 제8조 제2항 a) 및 e)에 규정된 예외에 속하고, 항소법원인 국사원이 언급하고 이러한 특정 범주의 정보 처리에 대한 금지가 관련 회원국의 법이 그러한 동의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가 그러한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제공한 경우 또는 정보 처리가 특히 정보 주체에 의해 명백하게 공개된 정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예외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a) 및 e)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g)는 중요한 공익적 이유로 필요한 경우, 연방법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범주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권리의 본질을 준수하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한다.

62.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a)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a)에 언급된 예외와 관련하여 해당 지침의 제2조 h)와 해당 규정의 제4조 제11항에서 제공된 « 동의 »의 개념 정의에서, 이 동의는 « 구체적 »이어야 하며, 검색 엔진 활동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처리를 통해 제3자는 정보 주체의 성명 검색을 통해 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결과 목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검색 엔진 운영자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참조 활동을 위해서 관련된 명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기 어렵고 찾을 수도 없다. 프랑스와 폴란드 정부 및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목록 삭제를 청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해당 청구일부터는 검색 엔진 운영자의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규정의 제17조 제1항 b)는 « 잊혀질 권리 »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정보 주체가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규정 제9조 제2항 a)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처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63. 반면,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e)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e)의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표명한 정보와 관련한 상황은,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언급했듯이, 해당 웹 페이지의 게시자와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

64. 따라서 그러한 경우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e)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가 관련된 웹 페이지에서, 검색 엔진 운영자의 활동에 의한 이러한 정보 처리는, 특히 그러한 취지로, 해당 지침의 제6조 또는 해당 규정의 제5조에 명시된 기타 적법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 - 131/12, EU: C: 2014: 317, point 72)

65.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14조 a)의 첫 번째 단락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7조 제1항 c)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상황과 관련된 이유로 문제의 링크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66.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 검색 엔진 운영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4항 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g) 및 해당 규정의 조건 내에서, 명시된 중요한 공익을 원인으로, 만약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한 후 표시되는 목록 상에 해당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관련된 인터넷 사용자가 헌장 제11조를 통해 보호되는 검색 방식과 같이, 해당 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요구된다. 만약 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자유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러한 형평은 특정 경우 정보의 성격, 정보 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를 비롯

해, 특히 공공 생활에서 정보 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당 정보 처리의 공익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81).

67.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언급된 정보의 특수 범주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사생활 존중 및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개입은 본 판결의 4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특히 심각할 수 있다.

68. 따라서 검색 엔진 운영자가 이러한 민감한 데이터가 게시된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와 관련된 목록의 삭제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운영자는 해당 사례의 모든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를 받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4항 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9조 제2항 g)가 규정하는 중요한 공익을 원인으로, 규정에 제공된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되고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해당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헌장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검색 방식으로 해당 웹 페이지에 접근한 잠재적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엄격히 요구된다.

69.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결과,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해당 지침에 따라 검색 엔진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가 표시되는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에 대한 삭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만약 해당 운영자가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에 언급된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문제의 링크이나,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e)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2항 e)는 이러한 의미에서, 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처리가 해당 지침에 명시된 기타 모든 적법성 조건을 충족하고, 정보 주체가 해당 지침의 제14조 a)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그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정당한 이유로 해당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만약 검색 엔진 운영자가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특정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웹 페이지의 링크에 대한 삭제 청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운영자는 해당 사례의 모든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 주체의 기본권에 대한 개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침의 제8조 제4항의 중요한 공익 및 해당 지침의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되고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해당 링크가 포함되는 경우, 헌장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검색 방식으로 해당 웹 페이지에 접근한 잠재적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엄격히 요구된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하여

70.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의 답변이 긍정적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하여

71. 네 번째 문제에 대해 항소법원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요청하였다 :

-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의 의미의 « 범죄 » 및 « 형사상 유죄 판결 »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한다. 그리고,
- 다른 한편, 만약 해당 정보가 사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와 관련이 있고, 절차과정을 고려해서 해당 정보가 현재 상황과 더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 엔진 운영자는 해당 정보가 표시되는 웹 페이지 링크와 연결된 링크의 삭제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72.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검사는 의견서 100에서, 경우에 따라, 프랑스 정부,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폴란드 정부와 유럽위원회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 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0조 제2항 g)이

규정하는 « 범죄 »나 « 형사상 유죄 판결 »에 해당되는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과 같은 자연인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구성하며, 이때, 해당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소된 자의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73. 따라서,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 후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해당 정보가 게시된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됨으로써, 검색 엔진 운영자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의 첫 번째 단락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0조의 특정 제한 사항의 적용에 따른 처리를 수행한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따른 이러한 처리는 해당 지침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적법성 조건을 준수하고, 특히 국내법에 의해 적절하고 특수한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에 적법하며, 이는 국내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74. 적법성의 다른 조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6조 제1항 c), d), e)의 규정된 요건에 따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5조 제1항 c), d), e)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적법한 초기 처리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된 목적을 위해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침 또는 해당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 특히, 해당 정보의 목적과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부적절한 경우 또는 해당 정보가 관련이 없거나 더는 관련이 없어졌거나 과도한 경우에 특히 그렇다 (이러한 의미에서 Google Spain 및 Google의 2014년 5월 13일의 판결 참조, C-131/12, EU:C:2014:317, point 93).

75. 그러나 이 판결의 66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10조에 언급된 정보 처리가 이러한 조항 또는 기타 적법성 조건에 따라, 해당 지침의 제6조 제1항 c), d), e)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의 제5조 제1항 c), d), e)에 명시된 것과 같이, 만약 헌장 제11조에 의해 보호되는 이러한 검색을 통해 잠재적으로 관련된 인터넷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한 후 표시되는 목록에 해당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 검색 엔진 운영자는 해당 지침의 제8조 제4항 또는 해당 지침의 제9조 제2항 g)에 언급된 중요한 공익을 근거로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76.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의 판례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한 유럽인권협약(la convention européenne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8조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주체의 형사소송에 관한 오래된 보고서의 제공 및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와 특히 대중의 정보의 자유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한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에 대한 보고서 및 논평 작성을 포함하여 민주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 외에도 대중은 이들을 수용할 권리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은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도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절차에 대한 공익의 정도는 가변적이며 특히 사건의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다.

77. 따라서 정보 주체에 대해 수행된 형사 사건의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절차의 초기 단계로 이동하고 현재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해당 절차의 과정과 결과, 경과된 시간, 공적 생활 및 과거 행동에서 정보 주체가 수행한 역할, 삭제 청구 당시의 공익, 게시 내용과 형식, 정보 주체의 영향과 같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정보가 현단계에서 정보 주체의 검색으로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서의 자신의 성명과 관련이 없다면, 게시된 웹 페이지와 연결된 링크의 삭제 청구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속한다.

78. 그러나 검색 엔진 운영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존중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권리와 잠재적으로 관련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해당 링크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엄격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해당 운영자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 청구 시에 결과 목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현재의 사법 상황, 특히 결과 목록의 첫 화면에 해당 주제에 관한 정보의 웹 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를 반영한다.

79. 전술한 사항에 비추어,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개인정보지침 95/46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 한편으로, 자연인의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이 의미하는 « 범죄 » 및 « 형사상 유죄 판결 »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성한다. 그리고,
- 다른 한편으로, 만약 해당 정보가 문제의 사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와 관련되고 더는 절차의 과정상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4항에 언급된 중대한 공익 근거의 검증과 관련한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색 엔진 운영자는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는 웹 페이지의 링크에 대한 삭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은 헌장 1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소송비용에 대하여

80. 소송절차는 본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상 항소법원에 제기되기 때문에 비용은 그 법원이 판단한다. 상기 당사자의 비용 외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대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1) 1995년 10월 2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및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금지 또는 제한은 해당 지침의 예외로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한 컨트롤러의 책임, 능력 및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해당 운영자는 정보 주체가 제기한 청구에 따라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해당 지침에 따라 검색 엔진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의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를 표시하는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삭제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만약 개인 정보의 내용을 담은 문제의 링크가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1항의 특별 범주에 속하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 동지침 제8조 제2항 e)의 예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지침 95/46 제8조 제2항 e)의 적용에 따라, 이러한

처리가 해당 지침에 의해 규정된 적법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동지침 제14조 a) 첫 번째 줄에 근거해, 특정 상황과 관련된 우선적이고 합법적인 이유로 해당 처리에 정보 주체가 반대할 권리가 없다면, 해당 운영자가 삭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지침 95/46 규정은 검색 엔진 운영자가 동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언급된 특정 범주에 속하는 개인 정보가 게시되어,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의 삭제 청구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 운영자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의 중대한 개입을 고려하고,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동지침 제8조 제4항의 중요한 공익 및 관련 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만약 정보 주체의 성명으로 검색되고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 해당 링크가 포함되는 경우, 헌장 11조에 따라 이러한 검색 방식으로 해당 웹 페이지에 접근한 잠재적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엄격히 요구된다.

3) 개인정보지침 95/46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한편으로, 자연인의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5항이 의미하는 « 범죄 » 및 « 형사상 유죄 판결 »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성한다. 그리고,
- 다른 한편으로, 만약 해당 정보가 문제의 사법적 절차의 초기 단계와 관련되고 더는 절차의 과정상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지침 95/46의 제8조 제4항에 언급된 중대한 공익 근거의 검증과 관련한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색 엔진 운영자는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는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에 대한 삭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헌장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은 헌장 제1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

Lenaerts

Arabadjiev

Prechal

von Danwitz

Toader

Biltgen

Ilešič

Bay Larsen

Safjan

Šváby

Fernlund

Vajda

Rodin

2019년 9월 24일 룩셈부르크에서 공개 심리에 의한 선고.

서기 A. Calot Escobar

재판장 K. Lenaerts